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 및 중재 역할의 재정립 방안*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Commercial Arbitration's Role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e-Trade and e-Commerce

박 문 서**
Moon-Suh Park

〈목 차〉

- I. 서 론
- II.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
- III. 상거래의 전자화 및 분쟁 확대
- IV. 중재 역할의 재정립 방안
- V. 결론 및 제언

주제어 : 중재, 전자거래,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상사중재, 분쟁해결, 상사분쟁, 조정

* 이 논문은 2010년도 호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and funded by Howon Univ. Research Promotion Fund)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I. 서론

‘경제발전 5단계설’에 따르면 이미 우리 사회는 고도대량소비사회의 단계(the age of high mass consumption society)에 진입한 지 오래 되었다.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소비성향을 보임으로써 상거래의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측면만 보더라도 1964년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수출의 날’(현, 무역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하였던 수출규모에서 2009년 그 3,600배를 증가하는 3,638억 달러(2008년 4,334억 달러 규모에서 감소)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는 2008년 약 630조 원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2009년에는 65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래규모의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상거래 방식에 있어서도 각종 디지털 수단이 접목되었고, 상거래 주·객체도 다양하게 변모하는 등 유통채널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국가전략사업의 하나인 전자무역허브(u-Trade Hub, u-TH) 구축사업을 완성하고 2009년부터 차세대 전자무역 솔루션 구축 등을 통해 전자무역서비스 확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무역 프로세스가 전자무역 방식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하여 장래 전자무역에 의한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국내의 상거래 전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무역을 통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유통 부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상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것 자체로써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것이고, 동시에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거래방식이 확산될수록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거래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상사분쟁의 중추적 해결방법으로 알려진 ‘중재’의 역할을 점검해보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8강 진입을 목표로 다각적인 무역전략을 수립 실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자무역 확산에 따른 중재 부문의 역할을 점검하고, 전자무역 환경에 적합한 중재 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중재 역량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에 의존하되,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현상 관찰을 통하여 획득한 현실적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접근법으로 진행한다. 다만 본 논문은 중재에 관련된 법리적 해석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무역기업의 전략 내지 정부의 무역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 중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역할 점검, 그리고 전자무역 시대의 도래에 부응한 중재의 발전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논문의 주제 및 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선행연구 수행의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

1. 필요성 및 관련 법률

(1) 경계 확인의 필요성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그만큼 두 영역의 경계는 모호한 측면이 많으며, 달리 표현하자면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확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를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한 예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다.¹⁾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를 확인해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무역거래에 대한 지원정책의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무역지원 성격의 정책적 배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는 확인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이유로 국가 인력양성의 방향이 차별적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무역의 경우 궁극적 인력양성의 방향은 무역인력 양성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인력이라 하여 무역거래를 중심으로 교육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전제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동시에 학문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두 영역의 경계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을 통하여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체계적 경쟁력 확보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유용하며, 시장별 역할 확인을 통한 발전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 각종 무역지원적 성격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업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무역거래를 수행하더라도 그 실적에 대한 인정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무역업 신고

1)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통무역과 전자무역의 차별성을 확인하거나 전통상거래와 전자상거래를 구분하는 분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수행되었지만,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를 구분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를 통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신뢰를 제고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 확인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의 경우는 전자무역과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거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엄연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전자무역과 B2B 전자상거래를 동일시하거나 양자 사이의 등가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전자무역의 경우 수출업자의 오피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승낙(반대오피 포함)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반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웹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자의 일방적이고도 표준화된 거래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B2C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전자무역과의 차별성을 분석해보면 <표 1>과 같이 몇몇 요인별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차이

| 구분 | 전자무역 | 전자상거래(B2C 관점) |
|----------|--------------------|-----------------|
| 국경요인 | 강함 | 약함 |
| 참여자관점 | 무역업자(수출업자-수입업자) | 판매자-소비자(중개업 포함) |
| 계약관계 | 쌍방성 | 일방성 |
| 전자문서 | 적극적 활용(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소극적 활용 |
| 대금결제 | 당사자의 결제방법 합의 | 판매자의 요구 |
| 거래프로세스 | 일반적 무역프로세스 | 운송/보험 등 종속계약 無 |
| 분쟁해결 | 중재합의 요구(중재조항 삽입) | 표준약관에의 의존도 高 |
| 무역전문성 요구 | 전적으로 높음 | 비교적 낮음 |

(2) 법규범 중심의 경계 확인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명시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특징을 단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²⁾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³⁾으로 정의함으로써 상거래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무역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전자무역촉진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법에서는 “전자무역”을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

2)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정의) 제5호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사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⁴⁾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를 칭하며,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의와 동일시하고 있다.⁵⁾

이처럼 우리나라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의 경계를 확인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자무역이나 전자상거래 모두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바를 기반으로 하되, 전자문서의 사용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문서는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 즉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 송신, 수신 및 보관되는 문서의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표 2> 참조). 다만 전자무역은 ‘전자무역문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거래의 대표성을 표현하고 있다.

〈표 2〉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적 정의

| 법률의 근거 | 정의 내용 | 비고 |
|--------------------------------------|--|----------|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전자무역문서”라 함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 무역서류를 표현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9호 |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
|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 |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 |
| 「전자정부법」 제2조 제5호 |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 |
| 「헌법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또는 변환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 |

2. 전자거래분쟁조정과 중재

(1) 분쟁해결기구의 다양화

개인과 기업은 물론 모든 활동의 주체들 간 거래관계의 대부분은 상사(商事) 부문에 관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정의) 제1호)

런되어 있다. 따라서 분쟁 내지 갈등의 원인도 대부분 상사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상사분쟁이 발생하며, 그 해결에는 비용과 시간 등 물질·비물질 노력을 요구한다. 상사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무역 또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전자거래가 확산되기 이전 상사분쟁해결의 대표적 수단은 ‘중재’(仲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주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정거래의 역할 증대 및 전문분야별 분쟁해결 수단들이 속속 등장함으로써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상사중재가 가진 전통적 역할이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자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빈번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자거래분쟁조정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분쟁해결기구(분쟁조정위원회)들을 정리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우리나라의 주요 분쟁해결기구

| 구분 | 위원회 | 주무부서(기관) | 근거법률 |
|----------------------|--------------|--------------|------------------------------|
|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
|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법 |
|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
|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특허청 | 발명진흥법 |
|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광역시도, 시군구 | 유통산업발전법 |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의한 분쟁조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 |
|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 공정경쟁연합체 등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거래기본법 |
|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 중재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
| | 중재인 | 대한상사중재원 | 중재법, 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 |
| | 사적중재(노사갈등) | (사)한국조정중재협회 | http://www.ikama.or.kr(민간단체) |

자료 : 박성용(2009), pp.78-79의 내용을 인용 보완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으로 전자거래의 신뢰성 제고, 전자거래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 권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을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전자거래분쟁조정 및 동 위원회의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설립 및 근거 | 전자거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2000년 4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전자거래진흥원) 내에 설치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迅速) : 조정의 전 과정은 가능한 45일 내에 처리 - 공정(公正) : 해당분야별 전문위원이 조정 진행 - 무료(無料) : 조정비용 전액무료 - 비공개 : 조정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영업비밀유지 내용 |
| 구성 | 학계, 연구기관의 전자거래 관련 전문가 및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하되,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조정위원을 50인까지 구성 |
| 조정대상 | - B2C 거래, C2C 거래, B2B 거래 분쟁 등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 : (예) 배송관련(배송지연, 미인도, 배송비), 계약관련(계약취소거부, 계약조건변경, 약정불이행), 상품정보오기(가격오기 등), 반품 및 환불, 개인정보(침해, 유출 등), 온라인 게임 등 |
| 조정방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면조정 :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정관계인이 조정장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조정실)에 출석, 대면하여 조정 진행 2) 사이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채팅조정시스템 또는 음성화상조정시스템으로 진행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 청구 -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에 접속, 사이버 상에서 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함으로써 조정기한 단축 및 제반 비용과 시간 절감 - 당사자 간 지역, 시간, 장소의 제한 없이 실시간 조정 가능 |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웹사이트(<http://www.nipa.kr>) 및 <http://www.ecmc.or.kr> 자료에서 발췌 작성

전자거래 분쟁조정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⁶⁾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및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⁷⁾

한편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의 특성을 중재제도와 비교하여 양 제도의 역할 구분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 따라 향후 양 제도의 역할을 일의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 하면 분쟁해결제도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신뢰있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한다는 본질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민간부문처럼 자율적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들이 분쟁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것도 희망스럽지 못하다는 데에 역할 재정립의 고민이 따른다.

<표 5> 전자거래분쟁조정과 중재의 역할구분을 위한 특성 비교

| 구분 | 전자거래분쟁조정 | 중재 |
|--------|------------|------------|
| 거래장소 | 국내거래에 적합 | 국제거래에 적합 |
| 거래규모 | 소규모거래에 적합 | 대규모거래에 적합 |
| 거래방법 | 온라인거래에 적합 | 오프라인거래에 적합 |
| 거래유형 | 전자상거래 | 전자무역 |
| 분쟁해결방법 | 조정 | 중재 |
| 해결방법명시 | 표준화 방식에 의존 | 당사자 합의로 명시 |

Ⅲ. 상거래의 전자화 및 분쟁 확대

1. 상거래 규모 확대와 전자화

한국무역의 성장을 견인해 온 배경에는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한 무역지원기관들의 노력과 더불어 수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글로벌 무대를 누비는 무역인들의 땀방울이 지구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자원의 한계와 시장의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무역을 도외시한 발전전략은 무의미할 것이 분명하다.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의 심화 현상이 한국경제로 하여금 변화에의 적응을 요구하는 진통도 있겠지만 오

6) 전자거래기본법 제33조(분쟁의 조정) 및 제35조(조정 성립)

7) 전자거래기본법 제36조(조정 불성립)

히려 수많은 기회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9년 기준 세계 15위 수준의 경제적 위상과 무역규모 9위 진입의 성과에서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무역중심의 한국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도 u-Trade Hub 전략에 따라 전자무역 솔루션 구축사업이 완성됨으로써 전자문서에 의한 무역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온 전통적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상사분쟁의 소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2001년 119조 원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630조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B2B 거래가 약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B2C 거래는 약 2%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표 6〉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10억 원)

| | 전자상거래 총규모 | 기업간거래 (B2B) | 기업·정부간 거래(B2G) |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 소비자간거래 (C2C) |
|----------|--------------|----------------|-------------------|--------------------|-----------------|
| 2001 | 118,976 | 108,941 | 7,037 | 2,580 | 418 |
| 2002 | 177,810 | 155,707 | 16,632 | 5,043 | 427 |
| 2003 | 235,025 | 206,854 | 21,634 | 6,095 | 442 |
| 2004 | 314,079 | 279,399 | 27,349 | 6,443 | 888 |
| 2005 | 358,450 | 319,202 | 29,036 | 7,921 | 2,292 |
| 2006 | 413,584 | 366,191 | 34,436 | 9,132 | 3,826 |
| 2007 | 516,514 | 464,456 | 36,801 | 10,226 | 5,032 |
| 2008 | 630,087 | 560,255 | 52,266 | 11,359 | 6,207 |
| 2009 1/4 | 150,764 | 128,686 | 17,518 | 2,803 | 1,757 |
| 2/4 | 170,404 | 146,708 | 18,987 | 2,827 | 1,882 |
| 3/4p | 163,022 | 148,512 | 9,421 | 3,067 | 2,022 |

자료 : 통계청(2009)에서 발췌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 무역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인프라를 2004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2004년 「전자무역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전자무역시스템(u-Trade Hub, u-TH) 사업구축에 따라 전자신용장(e-L/C) 개발, 온라인 수출대금결제(e-Nego) 서비스, 전자선하증권(e-B/L)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2008년 7월 29일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H)을 개통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7월부터는 사용자 확산과 전자무역의 해외연계라는 목표 아래 「차세대 전자무역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무역기업들로 하여금 One-Stop 전자무역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무역시스템 고도화, 사용자 연계 및 확산, 글로벌 연계라는 실천과제 중심으로 국토부, 관세청, 지자체 등과의 시스템 연계와 마케팅, 수출입대금결제 등의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전자무역서비스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무역거래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무역은 인건비 절감 및 문서의 출력·유통·보관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와 더불어 화물보관비 및 재고관리비 절감 등 거래부대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IT 중복투자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무역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부대비용 절감은 연간 3조 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2006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자무역 구축사업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매년 2조 6천억 원의 무역거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12년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시 약 4천억 원 규모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무역업계에 기대되는 전반적 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약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표 7〉 차세대 전자무역 구축사업 주요 내용(2009-2012)

| 년도 | 실천과제 | 구축내용 |
|------|-------------------|--|
| 2009 | 시스템 연계 | - 국토부(물류), 관세청(통관), 지자체·KOTRA·무역협회 등의 무역유관기관(마케팅) 정보 연계 |
| | e-Nego 시범 연계 | - 수출입 물량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계 추진 |
| | 부대비용 결제시스템 | - 운임 및 각종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 결제 일원화 |
| | 항공화물 운송장 유통관리 시스템 | - 수출입 화물의 54%(연간 360만 건)를 차지하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 운영 시스템 구축 |
| 2010 | 시스템고도화 및 사용자 연계 | - 전자B/L 권리등록부 이중화, 사용자 연계시스템·솔루션 개발·보급 등 |
| 2011 | 사용자연계 및 해외연계 | - FTA원산지 증명서 관리시스템 구축, 글로벌 대금결제 시범사업 등 |
| 2012 | 시스템고도화 및 해외연계 | - 무역·물류시스템 고도화, 해외 전자무역망과 e-Nego 시범서비스 연계 등 |

자료 : 지식경제부(2009)에서 발췌 작성

8) 지식경제부(2009)

전자무역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기업 수는 1997년 13,000여 개 업체에서 2008년 49,000여 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전자문서 중계 건수도 1997년 6,500만 건 수준에서 2008년 2억4,000만 건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이용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무역 5개년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전자무역 사용 기업 수는 2013년까지 200,000개 업체로 증가하고, 해외 전자문서 교환 수는 2008년 10만 건 수준을 2013년까지 100만 건 수준으로, 또한 전자무역 해외 연계 대상국 수를 현행 13개 국에서 목표연도에는 50개 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전자거래의 분쟁 확대

시장은 막강한 위력을 가진 ‘돈’을 매개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므로 심각한 갈등요인들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 및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합 등의 단체와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통업자로서 상인들은 ‘돈’이 만들어내는 질서유지의 원리에 따라 더 높은 이윤을 찾아 행동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무서 등 행정당국과 분쟁해결기구들이 있어 시장을 형성한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주거하는 인접지역에 시장이 존재하는 오프라인의 단일 유통채널이었으므로 상관습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다면 상거래에 관련된 분쟁의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의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시장, 즉 대형마트 또는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의 발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의 확대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자 및 소비자의 경계도 희미하게 되어 프로슈머(prosumer), 세일슈머(salesumer), 트라이슈머(trysumer)⁹⁾ 등의 형태들이 출현하여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변신은 날이 갈수록 예측불허의 상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통 패러다임 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상거래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의 발생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이윤 추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인들의 세계에서 이해당사자 간 대립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분쟁발생을 예방하는 일은 그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므로 각별히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부분이다.

지식경제부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간 우리나라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2000년 83건에서 2007년 2,668건으로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상담건수 역시 2000년 308건에서

9) prosumer = producer + consumer, salesumer = sale(seller) + consumer, trysumer = try + consumer

2007년 11,067건으로 약 36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는 하루 평균 30여 건씩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분쟁이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 및 활용 수준, 그리고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 전자상거래가 생활유통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되는 등 일반화되고 있음을 반증해준다(<표 8> 참조).

<표 8>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 및 분쟁조정 현황

(단위 : 조 원, 건)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 | - | 119.0 | 177.8 | 235.0 | 314.1 | 358.5 | 413.6 | 516.5 |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 - | 3.3 | 6.0 | 7.1 | 7.8 | 10.7 | 13.5 | 15.8 |
| 분쟁조정 건수 | 83 | 457 | 854 | 1,151 | 1,032 | 1,750 | 1,991 | 2,668 |
| 분쟁상당 건수 | 308 | 1,310 | 2,987 | 3,362 | 7,774 | 12,034 | 11,054 | 11,067 |

자료 : 지식경제부(2008)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상사분쟁 건수는 1,047건으로 전년대비 건수측면에서는 45% 증가한 규모이나, 클레임 금액 면에서는 10%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재 건수가 262건으로 전년대비 12%(건수) 증가하였으며, 국내중재의 비중이 215건으로 82%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표 9>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 접수 현황

(단위 : 건, US\$, %)

| 구분 | 2008년 | | 2007년 | | 증감율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총계 | 국내 | 743 | 129,109,686 | 511 | 142,814,107 | 45 | -10 |
| | 국제 | 304 | 69,559,925 | 274 | 100,183,342 | 11 | -31 |
| | 계 | 1,047 | 198,669,611 | 785 | 242,997,449 | 33 | -18 |
| 중재 | 국내 | 215 | 121,083,129 | 174 | 132,237,422 | 24 | -8 |
| | 국제 | 47 | 48,664,533 | 59 | 81,960,186 | -20 | -41 |
| | 소계 | 262 | 169,747,662 | 2331) | 214,197,608 | 12 | -21 |
| 알선 | 국내 | 528 | 8,026,557 | 337 | 10,576,685 | 57 | -24 |
| | 국제 | 257 | 20,895,392 | 215 | 18,223,156 | 20 | 15 |
| | 소계 | 785 | 28,921,949 | 552 | 28,799,841 | 42 | 0 |

주 1) 2008년 접수된 집단사건 88건을 1건으로 계산된 것임.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2008)

비록 여타 분쟁해결기구들이 처리하는 상사분쟁의 현황을 모두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전자거래분쟁조정과 중재제도의 경우처럼 분쟁해결을 위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하는 거래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가령 전자거래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e-Trust 제도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신뢰성분쟁조정제도는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상사중재원 각각의 역할이 혼란스럽게 인식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전자거래진흥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신뢰안전보장 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eTrust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⁰⁾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신뢰성 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신뢰성 분쟁조정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자가 그 부품·소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신뢰성보장사업자, 피보험자, 지정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는 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말한다.¹¹⁾ 이 경우 인증기관과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상사중재원 각각의 전자거래 분쟁해결 시스템이 매우 혼란스럽다.

IV. 중재 역할의 재정립 방안

1. 능동적 무역지원기능 수행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가 확산될수록 중재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들이 예견된다. 전자상거래의 분쟁발생 패턴이 과거의 상사분쟁 발생 패턴과는 상이한 측면이 많고, 거래 당사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소비자)들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상거래를 선호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니즈(needs)를 가지게 됨으로써 대표적 상사분쟁 해결방법으로서 중재의 역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비즈니스 영역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세부 부문별 거래가 증가할수록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며, FTA 등 지역협정이 활성화됨에 따른 중재의 역할 변화도 충분히 예견된다.

한편 B2C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거래이지만, 거래 건수가 빈번하다는 거래적 특성, 즉

10) eTrust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ecmc.or.kr/jsp/business/business05_05.jsp를 참조

11) 대한상사중재원, “신뢰성 분쟁조정” 참조.

소액거래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B2C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역시 거래 당사자(특히 소비자)들은 간편한 절차와 신속한 해결, 그리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용을 희망할 것이다. 상거래 관련 전문분야별 분쟁해결기구들이 속속 독립함에 따라 각자의 분쟁해결 영역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분쟁의 발생이 최소화되어 분쟁해결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분쟁해결기관들의 영역 경쟁으로 인하여 중재의 본질적 역할을 상실하는 경우로 비화된다면 중재 거버넌스의 당사자로서는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분쟁해결 업무가 전문영역별로 분산될수록 갈등관리의 총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당사자들에게는 관할기관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분쟁해결기관들도 유치 경쟁이나 실익이 없는 분쟁해결 건의 경우 관할을 회피하게 되는 등 혼선초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독립기관별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비효율적 측면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든, 소비자 분쟁이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이든 대부분의 경우는 상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중재역량이 세대별로 단절되어 있거나 직무별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영역이라도 조정이나 중재 이상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의 소극적 자세에 있기 보다는, 상거래의 당사자 우선원칙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 자세로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첫째, 중재기관의 권능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재합의가 없더라도 상사분쟁 전담제도는 '중재'로 인식되었고 그 전담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해할 정도로 그 대표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과 중재의 역할 구도에 변화가 있음은 분명하다. 즉, 양자 간의 역할 구도가 경쟁관계인지, 협력보완관계인지, 아니면 조정-중재-소송으로 이어지는 분쟁해결 단계의 순차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전자거래분쟁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 상거래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분쟁의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아직까지 사용경험이 일천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자문서 활용으로 발생 가능한 오류들을 예측하여 개선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많은 상사분쟁을 모두 법제도적 장치에 의존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거래 계약단계에서 분쟁예방의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고, 중재계약의 방법과 효력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 하여 그 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ODR(온라인 분쟁해결) 방안¹²⁾의 적용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12) ODR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는 오현석(2000), 이경옥(2003), 오원석·유병욱(2004), 김선광 외 2인(2005), 최석

2. 중재역량 강화 및 중재의 과학화

우선 중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부문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이에 상대적으로 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 중재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며, 전자문서 사용관행 자체에 대한 과거경험 부족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등 중재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중재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중재자원의 충분한 활용, 중재프로세스의 과학화, 중재의 분쟁예방 기능 강화 등 세부 부문별 노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중재자원의 공유 및 활용도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하부조직 및 지역센터 포함)이 있고, 학술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사)한국중재학회가 있다(<표 10> 및 <표 11> 참조). 또한 중재인들의 모임단체로써 대한중재인협회 등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재 인적자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의 경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세대 간 단절 없이 중재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재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표 10> 우리나라 중재자원 현황

| 구분 | 내용 | 비고 |
|------------|---|---|
| 중재서비스 거버넌스 | - 대한상사중재원(하부조직, 지역센터 등) - 한국중재학회 - 대한중재인협회 - 중재법제도 : 중재법, 중재규칙, 대외무역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 - http://www.kcab.or.kr - http://www.kaas.re.kr - http://www.kaarb.or.kr |
| 중재 인적자원 | - 중재인 : 1,156명(2010. 2월 현재) - 학회회원 : 460여 명 | 중재인으로써 학회회원인 경우는 중복됨 |
| 중재 지식자원 | - 중재사례 - 중재 관련 매뉴얼 - 각종 간행물, DB - 중재연구, 중재, 중재인회보 등 | 중재 관련 블로그, 카페 등의 커뮤니티 연결을 통하여 중재 지식자원 집약 |
| 중재 네트워크 자원 | - 국제상업회의소(ICC), 해외중재기관 등 - UNCITRAL 중재규칙, 뉴욕협약, 유럽협약, 워싱턴협약 등 | 국제중재규칙 및 각국의 중재법 |
| 기타 자원 | - 무역지원기관 : 무역, KOTRA, 수보, 수은, 중소기업청 등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법(2008), 박종돈(2008) 및 정용관(2009) 등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표 11〉 중재인 현황

(단위 : 명)

| 직종별 | 국내거주 | | | | | 해외거주 | 계 |
|-------------|------|-----|----|----|----|------|-------|
| | 본부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 | |
| 법조계 | 257 | 32 | 17 | 9 | 0 | 56 | 371 |
| 실업계 | 286 | 20 | 8 | 5 | 0 | 15 | 334 |
| 학계 | 174 | 48 | 24 | 22 | 0 | 8 | 276 |
| 공공단체 및 기타 | 98 | 1 | 10 | 5 | 1 | 13 | 128 |
|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 35 | 6 | 5 | 1 | 0 | 0 | 47 |
| 합계 | 850 | 107 | 64 | 42 | 1 | 92 | 1,156 |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황”, 2010. 2. 10. (<http://www.kcab.or.kr>)

둘째, 중재 지식자원의 체계적 발굴 및 그 활용도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10년 2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례는 238건만이 검색되고 있다. 중재판정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 공개의 동향을 벤치마킹하여 중재판정 결과를 중재사례로 전환하여 DB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중재경험 등 지식자원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재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댓글문화를 통해 상거래 자체에 대한 경험과 중재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블로그 문화의 현실을 반영하여 분산되어 있는 중재 관련 블로그 또는 카페를 링크시켜 중재 부문의 지식자원을 집약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재 관련 전문지식들이 매우 많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 커뮤니티에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재기법 발굴 등 중재의 과학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이 맘과 열정에 의하여 성과를 일구어낸 사례는 이미 과거 패러다임일 수 있다. 0.1초, 0.01초 아니면 0.001초를 다투는 올림픽 경기 승부세계의 사례에서 보듯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모든 영역에서 정착되고 있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중재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중재판정 사례의 DB화 및 이의 활용도 제고뿐만 아니라, 사례분석 및 연구를 위한 중재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정밀하고도 체계적인 중재판정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전자무역 확산에 따른 중재의 역할 재정립

u-TH전략의 추진으로 전자무역이 확산될수록 상사분쟁의 잠재성도 더 높아질 것이므로

중재 부문의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역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이나 증거능력은 물론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자무역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중재의 방향도 전통의 무역거래를 벗어나 전자무역의 시각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무역허브를 지향하는 국가사업 과정에서 중재 부문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중재는 무역거래 당사자 간 중재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역거래 상대방과의 전자무역계약(e-Contract) 과정은 물론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거래과정¹³⁾ 체결과정에서도 중재의 역할 내지 기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편 중재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상사 분쟁을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이므로, 국가무역 측면에서는 무역기업 등 상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비용절감과 신속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데에 본질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중재 역시 궁극적으로는 무역지원기능을 뿌리에 담고 있으므로 이 기능을 보다 확대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중재는 이제 사후적 분쟁해결 기능을 보완하여 사전적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중재의 분쟁예방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있으나 시간과의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전자무역 시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거래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는 무역계약 프로세스 역시 전자무역계약으로 이행되고 있으므로 중재 역할을 접목하는 등 이 부문에 대한 무역기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계약이 그러하듯 전자무역계약 역시 법리적 검토와 해석이 중요하므로 중재를 위하여 구축되어 있는 중재인을 비롯한 인적자원과 중재기관, 중재절차, 중재경험 등 제반 중재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무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전자무역 시대에 대비한 중재 역할 재정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상사분쟁 해결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중재 기능이 훼손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전자거래분쟁조정과의 업무적 중복이나 경쟁관계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중재는 분쟁해결비용의 절감, 신속한 분쟁해결, 클레임 예방활동 등을 통해 무역기업에

13)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해 거래은행, 요건확인기관, 구매·공급업체 등 거래상대방과의 전자무역거래 이용을 약정하는 절차이다. 최초 1회 약정이 필요하며 u-TH 사이트(<http://www.utradehub.or.kr>)에서 '거래약정관리'를 통해 거래약정 체결 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의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무역지원성이 높은 제도이다. 그럼에도 국가 무역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수출대책회의 등에서의 참여가 간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역홍보의 여러 과정에서도 중재활동이 누락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좀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 활동으로 중재 활동을 포지셔닝하고, 향후 전자무역을 비롯한 무역 프로세스 전 과정 중에서 중재의 취약한 정체성을 재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선도하느냐의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상거래 부문 역시 글로벌화 및 디지털화 변화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세계의 경제주체들이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경쟁의 마당이 되어 있다. 전자거래는 기존 상거래 범위의 시공간적 확장을 의미하는데, 즉 가상의 공간에서 하루 24시간, 연간 365일 동안 시간적 단절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자거래의 이와 같은 시공간적 확장과 결제방식의 다양화 등 거래 프로세스의 새로운 유형 도입으로 상사분쟁 발생의 잠재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 상거래의 전자화가 심화되면서 거래의 표준화 트렌드 역시 심화될 것이므로, 전통적 상사중재의 역할에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본가설에서 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이 전자거래분쟁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을 선호하거나 ODR(온라인 ADR)에 의한 분쟁해결 이용이 확대될 경우 중재의 역할은 더욱 위축될 것임에 틀림없다. 중재 역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ODR의 방법을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중재와 조정의 경계마저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각 경제주체들의 바람직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제 무역8강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언젠가 세계 무역4강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실천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상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일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재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문제의 출발은 전자무역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중재역량을 결집시키는 데에 있다.

또 「전자무역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의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할 것인가?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전자무역 거래약정의 단계에서 또는 전자무역계약에 중재조항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장치를 검토함으로써 전자무역 시대의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중재측면의 전자무역 지원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중재의 분쟁예방 기능을 강조하여 수출대책회의, 국가무역전략회의, 무역거래 기반조성 5개년 계획 등 무역지원 관련 제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중재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이수, “디지털 경제시대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5. 12.
- _____, “전자거래분쟁 해결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 _____, “전자거래분쟁에서 준거법 적용상 해석론”,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
- 강인원·박찬욱, “무역거래에 있어서 전자무역 도입과 수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6. 12.
-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2.
- 김선광·김종락·홍성규,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 구축방안”, 「중재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5. 8.
- 김정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4.
- 박성용,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8. 1.
- 박종돈, “ODR 분쟁조정시스템 활용을 통한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6. 27.
- 신군재, “중재를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3.
- 심상열·정운세, “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 유형과 분쟁 해결방안”,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12. 1.
- 오원석·유병욱, “사이버무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온라인 중재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
- 오현석, “Online에 의한 ADR시스템”,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0.
- 우광명·노현수, “전자거래의 재판관할에서 Zippo 슬라이딩 스케일 적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 2.
- 윤병철, “국제중재의 현황과 실무”,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9 여름호.
- 이강빈, “전자상거래 분쟁의 유형과 해결제도”, 「중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1. 12. 24.
- 이경옥, “대안적분쟁해결제도로서의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의 평가”, 「소비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소비자학회, 2003.
- 장병윤,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분쟁사례 연구”, 「중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중재학

- 회, 2001. 12. 24.
- 정용균, “온라인 ADR(ODR) : 발전현황과 시행상의 장단점”,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9 여름호.
- 최범석·박종석·정재우, “동북아 e-Trade의 활성화를 위한 e-ADR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2.
-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12. 1.
- 대한상사중재원, “2008 클레임 통계”, 2009. 3.
-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2006.
- 지식경제부, “전자상거래 분쟁 현황”, 2008. 4.
- _____, “우리기업을 위한 One-Stop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 추진: 전자무역시스템 고도화, 사용자 연계·확산, 글로벌 연계 추진”, 2009. 7. 6.
- 통계청, “2009년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쇼핑 동향”, 2009. 11. 25.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의 효과적 예방과 해결방안』, 2006.
- Bernardini, Piero, “Specific aspects of State-party arbitration”, 24th Joint Colloquium on International Arbitration(Paris), November 2007.
- <http://www.seri.or.kr>
- <http://www.nipa.kr>
- <http://www.ecm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Commercial Arbitration's Role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e-Trade and e-Commerce

Moon-Suh Park

This paper review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etween e-Trade and e-Commerce in view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and explores several improvements for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As the volume of e-Trade and e-Commerce has expanded day by day, there will be more disputes between traders no matter where the commerce may occur. But despite increasing of the disputes relating to e-Commerce transaction, it seems that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has been shrunk instead.

Korea needs to improve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meet and lead the age of u-Trade Hub(u-TH) service and to adopt an offensive or active attitude when arbitration used. Moreover, it is suggested that the competence of arbitration should not only be intensified more precisely but also be redesigned more systematically.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arbitration resources actively such as arbitrators as human resource and experiences as knowledge assets and also prepare the policy for sharing those arbitration resources between arbitrators more effectively.

Key Words : Commercial Arbitration, e-Trade, uTradeHub,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Conciliation